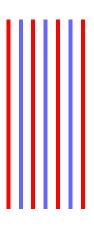
가맹계약서



No_0004_ 2016.

어퍼컷 점

주식회사정우인터내셔날

가맹본부 ㈜정우인터내셔날(이하 "갑"이라 한다)과 가맹점사업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과 같이 『UPPERCUT』가맹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look sharp in 10 minutes『UPPERCUT』가 맹사업(이하 "가맹사업"이라 한다)에 가맹점으로 참여하여『UPPERCUT』가맹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을"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갑"을 말한다.
- 2.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가맹점운 영권을 부여받은 자 "을"을 말한다.
- 3. "상품"이라 함은 "갑"이 가맹사업의 목적상 제조, 구입 또는 알선하여 "을"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 4. "제품"이라 함은 "갑"이 개발하였거나 서면으로 인정한 사양에 따라 제조되어 "을"의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 5. "미용 서비스"라 함은 "을"이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미용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 6. "미용 기기"라 함은 "을"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미용관련 모든 기구를 말한다.
- 7. "비품"이라 함은 "을"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내구성 용기 또는 기구를 말한다.
- 8. "소모품"이라 함은 "을"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모성 용품을 말한다.
- 9. "가맹점운영권"이라 함은 "갑"이 가맹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UPPERCUT』 가맹점을 운영하 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 10. "가맹비"라 함은 "을"이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와 운영매뉴 얼 제공의 대가 기타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대가로 "갑"에게 지급하는 금 전을 말한다.

- 11.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대한 "을"의 계약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 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12. "로열티"라 함은 "을"이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상호·상 표·서비스표·휘장 등의 사용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경영 지도 등의 대가로 "갑"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13. "운영매뉴얼"이라 함은 가맹점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갑"이 시스템화 한 가맹점 운영 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말한다.
- 14. "경쟁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갑"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가맹점의 표시)

- 1.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개설하는 가맹점은 다음과 같다.
 - 1. 점 포 소 재 지:
 - 2. 점포의규모:
 - 3. 상 호: **어퍼컷**
 - 4. 가맹점사업자명:
 - 5. 가맹점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 2. "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 제1항의 각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갑"의 승인 하 에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대한 증 빙자료(사업자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즉시 통지한다.

제4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적재산권)

- 1. "갑"은 영업표지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한다.
- 2. "갑"은 아래의 서비스표를 보유 중이며, "갑"은 "을"에게 다음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것을 허락한다.

<영업표지 등록 현황 표>

이미지	구분	명칭	등록권리자	등록번호
UPPER CUT But they in to revoke		어퍼컷	(주)정우인터내셔날	41–2016–0001911

- 3. 제2항의 영업표지뿐 아니라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영업표지 및 기타 "갑"이 "을"에게 제공한 지적재산권은 (주)정우인터내셔날의 독점적 인 권리이고 "을"은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만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 1.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점포소재지에서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가 표시된 간판 및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 및 사용하여 영업을 영위할 권리
 - 2. 제5조에서 인정한 영업지역 내에서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를 이용한 상품 및 미용 서비스 판매권
 - 3.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점포소재지에서 "갑"의 서면 동의를 얻은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 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
 - 4. 기타 "갑"의 서면 동의를 얻은 영업표지의 사용권
 - 5. "을"은 갑이 공급하는 상품 및 기타 점포 설비 등에 부착된 "갑"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표지를 훼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범위 외에 사용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 6. "을"은 자체 법인명의 등 법적인 명칭과 기타 통용되는 명칭에 "갑"이 현재 사용 중 이거나 신청 중인 명칭, 또는 변경된 명칭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
- 7. "갑"은 제2항의 영업표지를 본사의 경영적 판단에 의하여 변경할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변경 되기 전의 영업표지는 사용할수 없고, 이러한 영업표지가 부착된 제품과 기타 점포설비 등은 "갑"의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지역)

- 1. "갑"은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이를 "을"이 선택한다.
- 2. "을"이 선택한 영업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지도로 표시하여 별도 첨부 (별첨1)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 3. "갑"과 "갑"의 계열회사는 "을"과의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을"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는다.
- 4. "갑"은 "을"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을"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을"의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
 -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4. 각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갑"의 『UPPERCUT』 외의 다른 브랜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갑"은 "을"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제6조 (계약기간과 갱신)

- 1.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일 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2. "갑"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전에 "을"에 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갑" 또는 "을"에게 계약해지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4. 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다음 각호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자동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
 - 1.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4.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5.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 ·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7조 (계약당사자의 독립)

- 1. "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이고, "을"은 "갑"의 대리인 혹은 사용인이 아니며 "을"은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 2.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고객과의 분쟁 등에 대해서도 "을"이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3. "을"은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고용 주로서 직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갑"은 "을"의 노동관계 및 그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 4. "을"은 본 가맹점 운영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한 바 있고, 점포운영의 위험부담 여부, 이윤발생의 여부 및 매출액 등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갑"으로부터 확실한 보장 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한다.

제2장 개점준비

제8조 (입지선정)

- 1. "을"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하며, "을"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갑"이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을"이 하며, 점 포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을"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을 확약한다.
- 2. 점포 오픈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을"의 책임임을 확약한다.

제9조 (점포의 인테리어 설비)

- 1. 부스형 또는 매장형 모두 "갑"이 사전에 연구 개발한 부분이므로 "을" 이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없으며, "갑"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 에 의해 공사 및 제작이 진행되어야 한다.
- 2. 단, 단순하고 일반적인 공사부분은 "을"의 요청이 있을시 "갑"과 협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미용기기의 설치)

- 1. "을"은 "갑"이 정보공개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사양의 미용기기를 사용 하여야 한다.
- 2. "을"은 "갑"에게 미용기기의 설치를 의뢰하거나 "갑"이 제시한 기준에 의한 미용기기를 직접 설치 할 수 있다.
- 3. "을"이 미용기기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개점준비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갑"은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 4. "갑"이 "을"로부터 의뢰 받아 공급한 미용기기에 대해서는 제품 제조 사로부터 하자보증을 받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제품 제조사의 A/S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11조 (개점 전 교육·훈련)

- 1. "을"은 해당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가맹점 개점일 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이수시켜 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기간은 1일로 하며, 교육의 장소, 시간 등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 3.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을"의 교육 이수 정도가 미흡하거나 참여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에는 위의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교육기간의 연장에 따르는 추가 교육비용은 "을"이부담한다.

제12조 (인 · 허가)

- 1. 점포설비 관련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 및 제반 인 허가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 2. 제 1항을 해태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법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3조 (개점승인)

- 1. "을"은 점포의 설비와 재고 등에 관하여 "갑"이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하고 개업에 앞서 "갑"으 로부터 시설공사의 완전성과 가맹사업의 이미지 통일성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개점승인을 받아 야 한다.
- 2.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 1.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정해진 초도 물품과 상품 기타 장비의 공급 주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 "을"의 가맹점에 적정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3. "을"이 제8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완전하게 완료하지 못한 경우
 - 4. "을"이 개설비용의 지급을 가맹점 개점 전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 우
 - 5. 그 밖의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

제3장 "갑" 과 "을"의 권리와 의무

제14조 (가맹금)

- 1. "을"은 계약체결시에 가맹금으로 합계 금일천만원(10,000,000)(VAT별도)원을 "갑"에게 입금한다.
- 2. 제1항의 가맹 금이란 점포개설에 따른 장소선정지원비, 개점 지원비, 최초 훈련비, 노하우(운영매뉴얼 포함) 제공 비, 영업표지 사용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미포함이고, 기타 인테리어나 설비,공사비, 집기비품 비, 초도상품비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소요를 고려하여 별첨2의 개설비용 조건표에 따른 개설비용을 각각의 지급시기에 "갑"의계좌 또는 "갑"의 지정한 계좌로입금 하여야 한다.
- 3. "을"은 가맹점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 가맹금의 10
- 4. "을"은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영업이 종료할 경우에는, 위 가맹 금 중 계약기간에 대한 미 경과일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계약이행 보증금)

1. 보증금 없음

제16조 (로열티)

- 1. "을"은 별첨2의 개설비용 조건표에 따라 "갑"에게 매월 25일 로열티로 300,000원(VAT별도)을 "갑"의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하여 야 한다.
- 2. 매월 지급되는 로열티는 그 금전이 지급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상표사용료 및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이다. 다만, "을"의 최초 가 맹사업 개시일이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로열티를 책정한다.
- 3. "을"은 주거래 은행에 가서 "갑"이 지정한 입금 계좌에 매월 25일 기준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및 훈련)

- 1. 교육의 종류는 개점 이전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 2. "갑"이 시행하는 특별교육은 "갑"이 교육의 실시 1주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며, 특별교육에 대한 비용 및 세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 여 시행한다.
- 3. "을"은 필요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갑"에게 특별교육 및 훈련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4. "갑"은 점포개설 후에도 "을"의 점포관리 및 근무자들의 교육상태가 미흡하여 가맹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하게 하고 재교육을 지시할 수 있다. 재교육 시 비용은 "을"이 부담토록 한다.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 1. "을" 또는 "을"의 직원은 "갑"이 대여하는 운영매뉴얼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동조 제1항 내지 2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제19조 (경업금지 의무)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경영지도)

- 1. "갑"은 "을"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위원(supervisor)을 파견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의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 1. 계약이행(Contract):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명 성 유지 여부 확인
 - 2. 표준화(standardization): 고객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의 유지 및 각 제품의 특성을 극 대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해설 및 지도
 - 3. 시장조사(Market Research): 가맹점의 특성 및 시장변화 분석 방법에 대한 지도
 - 4. 판촉(Sales promotion): 신규 고객 창출 및 제품의 판매 촉진활동 지도
 - 5.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 2.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제1항에 의한 경영상의 정당한 규제를 성실하 게 이행하여야 한다.
- 3. "을"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갑"에게 특별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감독 및 시정 요구권 등)

- 1. "갑"은 "을"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이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상품의 보관상태, 서비스 상태, 위생 상태, 영업상태 및 매출상 황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 "을"이 가맹점으로서 의무와 점포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갑"은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점포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을"의 영업활동과 "갑"의 지원

제22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 1. "을"은 반드시 "갑"이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상품과 "갑"이 정한 품질 기준에 의한 미용서비스만을 고객에게 판매·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을"은 취급하는 제품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을"은 자기의 가맹점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한 미용서비스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이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장비 및 기기를 구입하여 그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갑"은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을"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위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갑"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상품 등의 조달과 관리 및 결제)

- 1. "갑"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상품을 "을"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갑"의 경영방침에 따라 상품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상품의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쌍방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 "갑"이 제조 또는 구매하여 공급하는 미용관련 용품
 - 2.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 3.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품목
- 2. "을"은 매일 지정된 시간까지 필요한 품목의 주문을 완료하여야 하고, "갑"은 "을"이 발주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한 경우 및 거래관행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물품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을"은 "갑"에 대해 상품의 주문을 요청함과 동시에 상품대금을 "갑"의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한계좌로 선입금하여야 한다.
- 4. "을"이 주문 상품에 대한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을 하지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상 피해의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5. "을"은 "갑"에게 공급 받은 상품의 품질을 인수, 보관, 판매 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취급 제품중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품은 즉시 폐기해 야 하며, 제품 관리 태만으로 인한 관계 법령 저촉시 그 책임은 전적으 로 "을"이 진다.

- 6.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 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갑" 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갑"이 제공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갑"이 정하며, 시장상황 또는 "갑"의 사정에 따라 공급가격은 유동적일 수 있다. 다만, "을"은 그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가격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최종 결정은 쌍방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4조 (자점 매입)

- 1. "을"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상품에 대하여『UPPERCUT』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단,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구 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갑"이 제시하는 상품 품질기준에 부합해 야만 한다.
- 2. "을"이 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자점매입을 하는 경우 "갑"은 "을"이 자점매입한 상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제25조 (상품의 하자와 검사)

- 1. "을"은 상품을 공급 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하자 유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갑" 또는 "갑"의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을"이 검사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교환/수량 보충/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갑"이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공 급한 경우에는 "을"은 제 2항의 기간과 상관없이 "갑"에게 반품/교환/ 수량 보충/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갑"은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가 공급한 상품/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급한 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지 않은 상품/자재 또는 "을"이 보관상의 잘못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 (상품공급의 중단)

- 1. "갑"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공급조건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2. "을"이 본 계약상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3. "을"이 "갑"의 품질관리기준(프리미엄남성헤어전문)을 3개월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4. "을"이 "갑"과의 협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 상 중단하는 경우
 - 5. "을"의 가맹점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6. "을"의 채무액이 제15조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7. "을"이 제18조 제 1항 내지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 밀을 누설한 경우
 - 8. "을"이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한 경우
 - 9. "을"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3회 이상 받은 경우
 - 10. "을"이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미용서비스 메뉴를 변경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
 - 11. "을"이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 매입을 하거나 제2 항에 의한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12. "을"이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13. "을"이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14.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촉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15. "을 "이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6. "을"이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17. "을"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 된 경우
- 18.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19. "을"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갑"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20. "을"이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21.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22. "을"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제27조 (영업시간)

- 1. "을"은 원칙적으로 월 (20)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7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다. 다만, "갑"과 사전 승인을 얻은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을"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갑"에게 휴업하기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을"의 사유가 정당할 시 "갑"은 승인한다.
- 3. "을"은 샵앤샵 형태로 입점시 해당샵의 운영시간 및 휴무등 운영지침을 준수한다.

제28조 (복장)

- 1. "갑"은 근무자의 복장 규정 등을 "을"에게 통지하고 "을" 또는 "을"의 종업원은 근무 시 "갑"의 규정에 따라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2. "을" 및 "을"의 종업원이 복장 규정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점포 내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갑"은 "을"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매뉴얼)

- 1. "갑"은 "을"에게 운영매뉴얼을 제공한다.
- 2. "을"은 가맹점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위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하여 제정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운영매뉴얼은 "갑"의 전속적 소유물이며, "을"은 이를 대외비로 취급 관리하여 가맹점 내에 안전하고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4. 운영매뉴얼의 변경, 수정, 보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한 "갑"의 경영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며 "을"은 이 경우 새로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을"은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운영 매뉴얼에 대한 변경, 수정, 보완을 건의 또는 제안할 수 있다.

제30조 (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

- 1. "을"은 청결한 점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과 사전합의를 거쳐 노후화 된 시설을 교체 · 보수하여야 한다.
- 2. 본 계약이 갱신되어 "을"이 가맹점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을"은 계약의 갱신시에 가맹점의 인테리어 및 간판 등 제반 설비를 "갑"의 권유에 따라 교체·보수하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3. "갑"은 가맹사업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교체·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과 합의하여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보수하여야 한다. 이때 "갑"과 "을"은 교체·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합의하고 점포 시설의 교체·보수에 관한 비용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에 관해서는 "갑"이 20%, "을"이 80% 부담하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에 관해서는 "갑"이 40%, "을"이 60% 부담한다.

제31 조 (회계자료 및 통지의무)

- 1. "을"은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장 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 유지하여야 한다.
- 2. "을"은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갑"의 통일적 사업경 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하며, 매일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매출상황과 종업원의 근무현황 등에 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을"은 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갑"의 직원이 출입, 조사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4. "을"은 사업장소, 대표자 및 점포관리자 인적 사항 등 사업자 등록상 또는 영업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영업표지 및 지적재산권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점포운영상의 주요 지침)

- 1. "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포를 운영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여하한 형태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을"은 "을"과 "을"의 직원 등의 개인 위생 관리에 힘써 제 3 자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염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감염된 당사자를 고객과 점포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 3. "을"은 "갑"이 제공하지 않았거나 서면 동의가 없는 간판이나 포스터 등을 "을"의 점포 내·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다.
- 4.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가맹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5.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리 경영시킬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갑"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해야 하며, 대리 경영인은"갑"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6. "을"은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대한 필요한 적절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 7. "을"은 "갑"이 필요 시 소집하는 가맹점사업자 회의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33조 (광고)

- 1. "갑"은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UPPERCUT』의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갑"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2. "갑"은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시, 도, 군, 구) 내에서 제1항의 광고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 비용의 부담은 광고 지역내의 점포 수에따라 안분하여 "갑"과 지역내의 가맹점사업자들이 나누어 분담한다.
- 3. 제2항의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 성격에 따라 각호에 준하여 부담한다.
 - 1. 상품광고인 경우에는 "갑"이 10%, "가맹점사업자"(전국단위의 광고의 경우에는 전국의 "가맹점사업자", 지역단위의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 90% 부담한다. 각 "가맹점사업자"간의 비용부담의 배분은 각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
 - 2. 상품광고와 가맹점 모집광고인 경우에는 "갑"이 50%, 가맹점사업자"(전국단위의 광고의경우에는 전국의 "가맹점사업자", 지역단위의 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50% 부담한다. 각 "가맹점사업자"간의 비용부담의 배분은 각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
 - 3. 가맹점 모집광고인 경우는 "갑"이 전액 부담한다.
- 4. "갑"은 매 분기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다음 분기의 첫 달 말일까지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5. 『UPPERCUT』의 광고, 홍보, 판촉 등에 관련된 인쇄물, 영상물, 기사 등의 모든 제작물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갑"이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본조 및 제34 조에서 각각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 (판촉)

- 1. "갑"은 판촉활동의 횟수,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2.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이 계획, 주관하고 "갑"이 배포한 상품교환권과 무료이용권 및 할인권 등(이하 "쿠폰"이라 한다)및 제휴마케팅에 대한 판매, 사용 등의 공동판촉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전에 "갑"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3. 제 2항에 의거, "갑"이 발행하는 쿠폰은 그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제2항에 의거 "을"이 회수한 쿠폰 및 제휴마케팅에 대한 보상은 "갑"과 "을"이 사전에 합의한 바에 의하여 정당하게 시행한다.
- 5. "을"은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갑"의 승인을얻어 단독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단, 단독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UPPERCUT』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갑"과 사전협의 후 "을"이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5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35조 (계약의 해지)

-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통지하고 2개월 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을"이 제26조 해당하는 경우
 - 2. "을"이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 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 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 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 면허 ·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 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 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 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3. "을"의 사정에 의하여 "을"이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1개월 전에 "갑"에게 계약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 "을"은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철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
- 3. "을"은 기타 "갑"의 상호 및 상표, "갑"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과 고객관리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갑"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4. "을"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운영매뉴얼 등)를 반환하여야 한다.
- 5. "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6.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는 위약금으로 종료 또는 해지일 이후 1일 10만원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7조 (손해의 배상)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제 19조(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일천만원 (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가맹금의 예치)

"갑"과 "을"과의 계약 체결 후, 가맹금은 하나은행에 예치한다. "갑"은 가맹금 예치취지 및 절차에 대하여 "을"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9조 (가맹금의 반환)

최초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가맹 금에 대하여 각호 1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1. 가맹사업 개시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 1. "갑"은 "을"에게 인도된 상품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정보제공 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 2. 가맹사업 개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 1. 가맹비는 "을"이 『UPPERCUT』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가맹사업 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갑"과 "을"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2. 위 1.목 단서의 경우 반환되는 금전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 업당자사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반환 범위를 결정하여 반환될 수 있다.
 -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의 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한다.

제6장 기타

제40조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이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을"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제41조(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1. "갑"이 매장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 2. 전항과 같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 또한, "갑"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 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갑"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 될 때 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갑"이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을"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을"은"갑"에게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제43조 (영업의 양도)

- 1. "을"이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2개월 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을"이 "갑"의 승인을 얻어 영업 양도를 할 경우 "을"은 잔존 계약기간에 따른 가맹금은 포기한다.
- 2. "갑"은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갑"은 "을"과 그 양수인이 본 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갑"이 전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갑"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르는 가맹비금일천만원(10,000,000) (VAT별도)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 "을"의 권리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갑"이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가맹비에 포함된다.
- 5. "갑"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4조 (영업의 상속)

- 1. "을"의 사망 시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을"의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갑"이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5조 (보험의 가입)

- 1.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을"의 종업원 기타 고객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갑"은 "을"에게 『UPPERCUT』 가맹점사업자들이 집단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권유에 의하여 "을"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는 "을"이 정한다.
- 4. "을"은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 등 보험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보험기간 만료 1개월 전 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신규가입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사본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5. "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46조 (지연이자)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 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47조 (통지방법)

"본 계약"상 필요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팩스(FAX), 인편 또는 우편으로, "갑" 또는 "을"의 계약상 주소로 배달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주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8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 1.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최종 계약이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본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 2. "본 계약"은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으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49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1. "갑"과 "을"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갑"의 임직원 포함)과 "을"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한다.
- 2.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 "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있다.
-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50조 (특약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16

갑

대표이사: 강은희(인)

사업자등록번호: 215-86-02754

상 호: 주식회사 정우인터내셔날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83 (가락동) 우송빌딩 B1

연락처: 02-409-4600

을

성 명:

주민번호:

점 포 명: 어퍼컷

주 소:

연 락 처:

상권구역도

별첨2

< 개설비용 조건표>

구분	내용		금액(VAT포함)
가맹금	가맹비,교육비		11,000,000
인테리어	부수형	매장형	11,000,000
	(2부스기준)	$(9.9m^2)$	
	부스당 포함내역:	목공:내부벽면2면	
	외벽,시술장,거울,소독기	전기:내부콘센트,배선,전등	
	미용의자1대,드라이기1대,	싸인:전면부분썬팅	
	분무기1개,보조방석1개	내부POP3종	
	넥페이퍼세트,커트보1장	시술대가구2세트	
	어린이커트보1장		
	직원유니폼1장		
		세트당포함내역	
		거울,자외선소독기1대	
		미용의자1대	
		드라이기1대	
		손세정제1개	
		분무기1개,보조방석1개	
		넥페이퍼세트,커트보1장	
		어린이커트보1장	
		유니폼1장	
합계			22,000,000
로열티	330,000/월	330,000/월	330,000/월
별도사항	부스추가당5,500,000원추가	3.3m ² 당3,000,000원추가	
	간판,쌰시,유리,천정공사,전면외싸인,바닥공사,전기증설		
	전기인입공사,전기계량기,냉난방기,철거,CCTV,오디오,기타집기류		
	에어클린은 가맹계약기간내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